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2024.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성과관리) 044-202-6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기술료) 044-202-6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과제평가) 044-202-69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연구지원체계평가) 044-202-69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제재처분) 044-202-69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044-202-69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동시수행) 044-202-69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연구보안) 044-202-69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기타) 044-202-69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학생인건비) 044-202-69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의 내용
 -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 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전문개정 2022. 12. 16.]

부칙 <제121호,202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o	연구개발	게호	I.A.I] 신청						안등급	
			/11 -	· * I		[] 협약	용			일빈	<u> </u>	,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م ا ا	H DH		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사입		(해당 /	사업명 시 작성)				
	고기	H 중					종골	날연구기 (해당	#발 식 시 작성	별번호 				
공고번호							C		<u>., </u>					
	선정박	방식		책지정[,	~ n ¬	- []	Hal	7 — [1	0 7	-	
	リーファレッレ あよっ	 술표준분류		모: 지 이 스브	<u>성공모[</u> 류 코드명	<u> </u>	품목공. 2순위 :			공모[% 3:		유공.	모[<u>]</u> 코드명	0/
1			17	1 12	ㅠ 고드엉	70	2판귀 :	上正市	고드병	% 3	도시 그	正田	고드형	%
7 11111	본 무저 / 루 (해당	기술분류 시 작성)	1순	위 소분	류 코드명	%	2순위 :	소분류	코드명	% 3	순위 소	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	'개 발명		국문										
	(해당 시	l 작성)		영문										
	연구개빌	라게명		국문 영문										
	조 기 서 그 :	-II HL-1 -I		<u>) </u>					人	l업자등	록번호	<u>-</u>		
	주관연구:	개말기판		주소	(우)					법인등				
				성명						직				
연구책임자		연르		장전화					휴대					
		T		선	자우편		007 141	4 00		가연구			-II OI \	
			전체		413 FL		YYY. MI YYY. MI		- YYY - YYY			(<u>년</u> (년		
(연구개발기간	단계	15	<u>·</u> 上계	1년차 n년차		<u>111. IVII</u> YYY. MI							
	근 제 글시신	근 게 (해당 시 작성)			1년차		YYY. MI							
		(-1,0 1 10)	nE	· 단계	<u>· ㄴ ·</u> n년차		YYY. MI							
	어 그게 바니	정부지원	기괸	부담	그 외		등의 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기	개발비	지방자치	단체	기타	()		합기	ll .		연구가	
	(단위: 천원)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 Ē	계	외 자	전금
	총계													
	1단계 1년차													
-	n년자													
	n단계 <u>1년차</u> n년차												-	
_		 											비고	
_	공동연구개 (해당 시	말기판 등 작성)	기	관명	책임지	ŀ	직위	휴대	내전화	전자	우편 -	역할	· 기관·	유형
	공동연구	개발기관												
ŀ	OLELO 7	711 H L 7 L 7 L												
	위탁연구	게일기산												
	연구개발기	관 외 기관												
	~ 7 - 11	H L ¬ I ¬ II		성명						 직위				
	연구개		ot =	지	 장전화					<u>- : : :</u> 대전화				
	실무딛	i닝사	연르		자우편				국가연	연구자반	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 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 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 재한니다.
-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7 (해당	개발 : 시 직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	발과저	비번호			
기 술	국가과학기 표준분류	술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	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술 분 류	부처기술분 (해당 시 직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	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빌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명												
잔	선체 연구개발	기간												
	총 연구개발	비	(정부지						난부담연구 원, 그 외				천원)	
	연구개발단	계	1		응용[에 해당되			[]		출성숙 시 직			시점 기준 시점 목표	
ć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ç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최종 목	#										
			전체 내	용										
	연구개발	1	단계	목표	E									
목	표 및 내용	(해당	시 작성)	내용	2									
		n	단계	목표	E									
		(해당	 시 작성)	내용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본문 1 >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국내외 시장 동향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3) 표준화 전략
- 4) 사업화 계획
- (1) 사업화 전략
- (2) 투자 계획
- (3) 생산 계획
-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 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 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게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식성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_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말파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 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 • 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게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43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 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 • 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식성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 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생연구				시간		참여연도				
성명 <mark>국적</mark> 소속 기관	. 신위	국가 직위 연구자	학위 및 전공		학위 및 전공 (학생연구자인 경우만 기재)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선택제 근무 구분	1단계		ne	·	총 참여기간				
		기관		번호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현 입학 기가		(애당 시 (해당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속 기관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지원		년연도				
성명 국적			직위			구분 근	근무 구분	1단계		n단계		총 지원기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해당 시 작성)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서머	국문		그저	
	성명	영문		- 국적	
책임자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국	문			
실무	경	문			
달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000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성명	국문				- 국적	
	6.9	영문				4.4	
책임자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국	문					
ΑΙ 🗆	Ģ.	문					
실무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100	부	-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중앙행정기관	비고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참여기간)	수행내용	(전문기관)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 11	C, 2-1/
연구개발기관당	나업회		지역 ^{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결	출액	매출발생	기술
한 기계 할 기관 (방식1	형태 ^{2」}	^ ^ ¬	시티되어	[집화당 대용		국내	국외	연도	수명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 · 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 •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전치: 전전, 작문설)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C	배표자 성명/국적			
4	(대학, 정	기관 유형 부출연연, 중소기	업 등)		
5	최대	대 주주 성명/국적	4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Hallin	10	yyyy년		
11	부채 ㅂ (최근 3년 간		yyyy년		
			yyyy년		
	05		yyyy년		
12	유동 비 (최근 3년 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 총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yyyy년		
10	기준)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ul O	yyyy년		
14	이자 보상 (최근 3년 간		yyyy년		
			yyyy년		
	od ol o	IOI	yyyy년		
15	영업 0 (최근 3년 간		yyyy년		
			yyyy년		
			성명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부서		
			직위		
16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장전화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휴대전화		
	표지의 "실무담당	당자"와 다름)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터 구개발	<u></u>		그 외	기관	등의 조	[원금			합 계	
	一一	연구개발비	연	[구개발	비	지병	방자치단		フ	타()		E 71	
단 계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1													
n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1. 연변/					
								연구기	ㅐ발비								
							직접비	1								οd ¬	od 7
연구개발기	기과며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E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연구 개발비 외	연구 수당 계상
	150	인건비	일반 ¹	특례 ²	일반 ^{3」}	특례 ^{4」}	재료비	연구 개발 비	00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한 I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기준 기준 금액 ⁶
	현금																
	<u>현물</u>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시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 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	구개팀	<u>-</u>								
						직 [;]	 접비									α	od 7
연치	·L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ı I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연구 개발비 외	연구 수당 계상
2.	1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00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 천원)
							연	구개빌	타비								
						직	접비									연구	연구
연호	:ŀ		학생인	인건비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친구} 수당 계상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_{5」}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우	: 천원)
							연	구개별	타니								
						직:	접비									연구	연구
연치	ŀ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친구} 수당 계상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비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 천원)
						연	구개별	타니								
					직:	접비									연구	연구
연호	ŀ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 1 수당 계상
	1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비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₅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시설 • 장비 구축 • 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 • 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활용계획

(단위: 천원)

		기존/신규			비용		전담인력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본/선표	운영기간	연간운영	과제 반영	현금/현물	선담한덕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十七		비용	비용	구분1』			
			уу-уу						
			уу-уу						

^{* 1」}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빌	·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千五公号 -)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근거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2	1)
۷.	2)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 (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 (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 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 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 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별첨 양식] (5쪽 중 1쪽)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	터기과데	뎌									사업명					
	2/16	5						사	업명		 사업명	1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사람성					
공고	번호															
총괄연구개	바	식별번호	Ē	총괄연	구개	발명	· 6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² 책임지	ŀ	참여기관수		관수	
6일만 [개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	발괴	제명	주	관연구개	발기관명	연구	2책임지	ŀ	참여	기관	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	-제1															
연구개발과	-제n															
		전	<u>선</u> 체				YYY	Y. MM	l. DD -	- YYYY	. MM.	DD)(ļ	년	개 :	ഥ 월)
od I all HL			4 = 1 =	1년	<u></u> 차		YYY	Y. MM	. DD -	- YYYY	. MM.	DD)(년	개-	월)
연구개발 기간	단	계	1단계	키 n년	호차		YYY	Y. MM	l. DD -	- YYYY	. MM.	DD)(L	년	개-	월)
(해당 시	나 작성)	n단계	11년	1차		YYY	Y. MM	MM. DD - YYYY		Y. MM. DD)(Ļ	년	개-	월)
				n년	크차					- YYYY	. MM.	DD)(ļ	년	개-	월)
연구개발(정부지 연구개							등의 지 기타			합기	계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권 <i>)</i> 	현금	3	현금	현	물 현	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등	물	합계]	외 지원금
총계																
 1단계 -	1년차															
1인계	n년차															
-1211	1년차															
n단계 -	n년차															
				성	 명		Γ,				직위					
총괄연구책임자		od 21-	-1	직장	전화				ភ៌	대전호	:					
		연락치	1	전자	우편				국가연구자번호		번호					
÷377301	7-11-11-	117161		성	명					직위						
총괄주관연구 실무덤	ᅷ개발기 담당자	'[관의	연락치	H	직장	·전화				ភិ	대전호	1				
				'	전자	우편				국가인	연구자	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중글한구개글당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중글한구개글당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중글단 개글당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최종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1」}) ^{단위}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 전 보유국/보유기관 국내 수준		연구개빌	목표 설정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근거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 전 보유국/보유기관 국내 수준		연구개빌	목표 설정 근거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근거

1-2)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빌	날 목표치	목표 설정	
(주요성능)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근거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 1) 연구개발과제 1
-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 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2) 연구개발과제 2

-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	남연구:	개발비	지병	그 외 방자치단	기관 단체		[원금 타()		합 계	.,,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													
	1단계	n													
총괄 연구개발	n단계	1													
연구개발	미단계	n													
	소계	1													
	工加	n													
	1단계	1													
d 7	1 2 7 11	n													
연구 개발	n단계	1													
과제 1		n													
	소계	1													
		n													
	1단계	1													
연구		n													
개발	n단계	1													
과제 n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_ 1	/					
								직접	비								연구	연구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위탁	국제	연구						개발비	수당
	구분		인건 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연구 재료 비	· 연구 개발 비	공동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계상 기준 금액 ⁶
		현금																
Ç	총괄 연구개발	현물																
		소계																
	연구	현금																
	개발 과제	현물																
	1	소계																
	연구	현금																
	개발 과제	현물																
	n	소계																

국기	나여그	그 기	바	(LO	! 혀	O E	서
-		/	/	` I ⊢	1 1		, >

						국가입	ュナノ	ᅢ딸	사업	엽	삭서					
중	앙항	성정기	관명							전문기	관명					
	人	l업명														
	_	년구개 시 ?														
연	구가	l 발괴	제명													
	공.	고번호	호						(연구개 ' (해당 시 구개발	· 작성	쥑)				
주관	·연구	 ¹ 개발	기관	명					Ŀ	연구최		<u>: —</u>				
공동	연구	¹ 개발	기관	명						책임	사					
위탁	연구	개발	기관	명						책임	· 사					
			전치	: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연구	개발	기간	단	1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계	n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개발비 :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연구2	부담 ∦발비		l 기관 등 h치단체	등의 지· 기타			합계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지원금
			총계	00	·00.00\											
1단	· - - - -				(00.00)											
					·'00.00)											
ne	 관계				·'00.00)											
			1(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 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 년 월 일

연 구 책 임 7	다 : 소	<u> </u>		성 명 :	
[협약	당사자]				
중 앙 행 정 기 관	의 장		(성	명)	직 인
전문기관의 정	당		(성	명)	직 인
주 관 연 구 개 특	발기 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 동 연 구 개 팀	발 기 관 의	장	(성	명)	직 인
위 탁 연 구 개 특	발 기 관 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 2. 그 밖의 부	획서(협약용) 1부 가 서류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5.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7.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

※ 아래의 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하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을 따른다.
-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 요구
 -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과 의무를 대행한다.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 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 6. 연구개발비의 사용 ·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 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 15.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 5. 연구개발비의 사용 ·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 7.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 11.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 13.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위: 천원)

						(- 11 7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닌계	선사	TE	기관령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1단계	1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n단계	1사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				
II단계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기관	부담 연구개	발비	입금	기한
닌계	[전자	下正	기원당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1단계	1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n단계	1사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						
11건계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사인포	공동연구개발기관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제33조에 따른다.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되도록 한다)
 -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 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제35조에 따른다.
-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 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매출액발생	매출액발생	매출액발생	매출액발생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술기여도					

- 제18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 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0조, 영 제42조·제43조와 법 제19조·제20조 또는 영 제42조·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연	차	보고	서							일빈	보안등 H]	등급 보안[1
	중앙행정기관	반명 -								사	업명			- L J, '	<u> </u>	
7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얼명 	(해당		낚성)				
	공고번호								(해	구개발 당 시 2	작성)					
기			1순위	소분 .	류 코드망	병 %	2순:			개 발과지 코드명	제번호 %		 : 위 소	 분류 코.	 드명	%
술분류	부처기술:	로 류	1순위	소분	류 코드망	병 %	2순:	위 소	분류	코드명	%	3순	: 위 소	분류 코.	 드명	%
П	·		국둔	<u> </u>												
	(해당 시 작		영둔													
	연구개발과제		국문	-												
	진 게 글 ᅬ ^	o	영문									-				
	주관연구개발	기관	기관! 주소	:	(우)						자등	ệ번 s				
	어그#OLT	-1		성명	장전화					7	직우 후대전	•				
	연구책임지	٠٢	연락처		<u>영선와</u> 자우편						구네 <u>요</u> 연구:		ō			
		7	 전체		716	YYY	/Y. N	1M. I	DD	– YYYY)	
	연구개발기간	단계								- YYYY			•		<u> </u>	
	연구개필기간	(해당 시		<u></u>						- YYYY						
) 연도 -	1 -1 1	0단계					M. DD	<u> </u>	ΥΥ.	MM.	DD(I		H월)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부담		<u>외 /</u> 자치[지원금 타()			합계			7 帰川
	(단위: 천원)	연구개빌 현금	<u>년</u> 현		발비 현물	시 등 현금		^{길세} 년물			구 ㅎ	년금	현물	합계	-	리 원금
Г	총계			ш					_ <u>_</u>			<u>- 11</u>		H 11	7/10	<u> </u>
F	1년 차															
	1단계 기단시 n년차															
	n단계 1년차															
	<u> </u>															
	해당 연도 공동연구개발기	<u></u> 과 등													 고	
_	(해당 시 작	_	기관	명 	책임	일자 		직위		휴대전호	ㅏ 전	<u></u> 자유	으편	역할	<u> </u>	유형
	공동연구개발	기관														
	위탁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성명							직우	ı				
연구개발과제					장전화					7	<u>식구</u> 후대전					
	실무담당지	; }	연락처	전:	<u> </u>						<u>연구</u> :		호			
_	1 -1-111-11	-1-0-1	10-1	1.1.	ALO =		-1 -	LOL		-1 -1-1	710	1.	7		7 - 1 - 1	!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3)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8.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 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 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 국가과학기술 술 표준분류		1순위 :	소분류 크	코드명	%	2순위	소분	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분 부처기술분류 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	소분류 <i>=</i>	코드명	%	2순위	소분	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단계															
해당연도		* 10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단계			천원	비: 천	원, 기	관부담연	구개발	비:	천원, :	지방자	치단체: 친	년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천원 원연구개발	비: 천	원, 기	관부담연	구개발	비 :	천원, :	지방자	치단체: 찬	<u>년</u> 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 작성)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최종 목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7	전체 내용	3												
	15	· - - -	목표												
		시 작성)	내용												
	nE	 단계	목표												
	(해당	시 작성)	내용												
	케다	연도	목표												
	णह	21工	내용												
연구개발성괴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한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성과지표명		연도	1단계 (YYYY~YYYY)	n단계	계	가중치 (%)
91/11/11/11			(11111-1111)	(YYYY~YYYY)		(/0)
		목표(단계별)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1」}		실적(누적)				
선임기관 등록 기록 자표 "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2」}		실적(누적)				
연구개일파제 극성 반영 시표 3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세						

- * 1」전담기관 등록 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0 . 00				
평가	하모 - :		전체 항목에서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빌	: 목표치	목표설정
(주요성능 ^{1」})		단위	차지하는 비중 ^{2」} (%)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근거
1									
2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등 명칭		출원					등록		활용	
번호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기여율	여부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근포	다이 돈야	근6 기단	인증명	인증명 인증 번호		7/10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 ¹	인증여부 ^{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 ³ 」	제안/인증일자

-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 ^{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 ³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번호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	지역 ³ 」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기술
							국내 (천원)	국외 (달러)	배풀 발생 연도	기울 수명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	출액	합계	산정 방법
시티커스	50 UT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소	요기간(년)			
	소요예	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에 성 배달	대포(신권)			
사업화 계획	응용한 타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기술, 제품을 모델, 제품 날계획			
무역 수지	수인대	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가석 효과(천원)	1 8 91				
. = - ((==)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합계	
군민			yyyy년	yyyy년	합계
합계					

□ 고용 효과

		부	고용 효과(명)
		고 6 표기(6)	
	개발 전	연구인력	
고용 효과	개월 신	생산인력	
고은 표된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I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	기준 연도		현황										
신호	건오 군유 기군 연도 	학위별			성	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 • 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험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험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등록	연구시설 • 장비	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상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 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1 1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2	1)
۷.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연차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해당 연차에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해당 연차에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연차에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연차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의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기술·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경쟁기술·지재권·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

[뒷면지]

주 의

-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다.
-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단겨	보고	서						일반	보안등 [], <u>t</u>	:급 보안[]
	중앙행정기관	관명								l 남업명					
전	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사업명	(해당		작성)				
	공고번호							(해	구개발 당 시	작성)				
-,	7-1-1-1	-1.4						연구	개발과	제번.	호				
기 술	국가과학: 표준분	기술 류 	1순	위 소분	류 코드딩	병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년	는위 소	분류 코	드명	%
분 류	부처기술· (해당 시	분류 작성)	1순	위 소분	류 코드딩	병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년	는위 소	분류 코	드명	%
	총괄연구개팀	발명		국문						_					
	(해당 시 기	재)		영문											
	연구개발과제	데명		국문 영문											
	ᄌᆌᆏᄀᆌᄞ		7	<u> </u>					사	업자등	등록번	호			
	주관연구개빌	[기판		주소	(우)				법		록번호	2			
	al 7 - 11 al -		성명						직						
연구책임자			연릭	F T-1	<u> 장전화</u> 자우편				٦-		전화 P자번	÷			
			<u> </u> 전체	12	사무진 	YY'	YY. MN	/ DD					 년 개월)	
<u>C</u> :	년구개발기간 -			·계[]			YY. MN		– YYY		M. D	•		•	
		단계	nE	<u>·</u> 계[]			YY. MN		- YYY				1 개월)	
	연구개발비	정부지		기관-	-		외 기관			-		합계			
	(단위: 천원)	연구개		연구가			자치단치		타(-)	-1-			2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를 현·	<u> 금</u> 현	물	현금	현물	합계	기원	월금_
	<u>총계</u> _{디 제} 1년차														
1	단계 기원시 n년차														
	1녀차														
	단계 n년차				_										
-	공동연구개발기			기관명	 - - - - -	임자	즈	부위	휴대전	화	전자위	- 우편 -		<u> </u>	
	(해당 시 작								.,				역할	기관-	유령_
	공동연구개빝	날기관													
	위탁연구개빌	날기관													
Ç	연구개발기관 :	외 기관													
	연구개발괴 실무담당 ⁷		연릭		항 장전화 자우편		<u>'</u>		국:		위 전화 구자번	호			

이 단계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8.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 연"으로 기재한니다.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								Ç	연구개빌	<u></u> 라제	번호				
기 술	국가과학기 표준분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의 소·	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 코드	명	%
분 류	부처기술년 (해당 시 3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의 소·	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 코드	명	%
	총괄연구개발 (해당 시 작															
	연구개발과저	<u> </u>														
	전체 연구:	기간														
	해당 단	계														
	총 연구개	발비			<u></u> 베: 천	원, 기	관부담연	연구개병	밸비 :	천원, :	지방자	치단체: 천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 단	계	총 (정부지원	천원 원연구개발	발비: 천	원, 기	관부담연	연구개	발비 :	천원, 기	지방자	치단체: 친	<u>년</u> 원, 그	외 지원	!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술성숙도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 작성)								시점 :								
C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															
		Ž	희종 목표	Ē												
		7	전체 내용	2												
	연구개발	4 FL7-	[]	목표												
목	표 및 내용	T 인가	II []	내용												
		n다7:	[]	목표												
		116,	יין [내용												
Ç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연구수행 결과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
		연도	1단계	n단계	계	가중치
성과지표명			(YYYY~YYYY)	(YYYY~YYYY)	Z1	(%)
	도	락표(단계별)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1」}		실적(누적)				
신남기판 등록 기탁 시표	도	락표(단계별)				
		실적(누적)				
		락표(단계별)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2」}		실적(누적)				
신 게글되세 국중 신중 시표	도	락표(단계별)				
		실적(누적)				
			·			
71						

- * 1」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 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1										
평가	나 항목	목 단위	전체 항목에서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주요성능 ^{1」})		단취	차지하는 비중 ^{2」} (%)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근거	
	1										
	2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등 명칭			출	원			등록			하요
번호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기여율	활용 여부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이즈 브아	이즈 기과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신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명	인증 번호	나이 탁그리	4/16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 ¹	인증여부 ^{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 ³ 」	제안/인증일자

-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시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 ¹	표준명	표준기구명 ^{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 ³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번호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2]}	지역 ^{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국내	출액 국외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천원)	(달러)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를	돌액	합계	산정 방법	
시티커스	20 CT	국내(천원)	국외(달러)	日和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소	요기간(년)			
	소요예	산(천원)			
	에사 메츠	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에 경 매 콜	대포(전편)			
사업화 계획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기타의 제국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현재	3년 후	5년 후
개선 효과(천원)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군인	사타차의	사다와 다세	yyyy년	yyyy년	합계
	합계				

□ 고용 효과

	구	분	고용 효과(명)
	게비	연구인력	
고용 효과	개발 전	생산인력	
고은 표되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	식별		성	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 • 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험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험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납화진 제품자인, 베물픽 증정시표(제급계인시, 납품계곡시 중 베물 확인기증 대구 회계자표 <i>)</i> 중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등록	기술요약정보	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한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 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 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 1 1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0	0	0
0	0	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모표	미닥	원인(사유)	자체부선	내용
	-1	-12	면 다(시)ㅠ/	기계 규 극	71170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말이파 활용계획표(0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IE	매년 목표치
국외논문	ΗIS	CIE	
	7	4	
	SC	IE	
국내논문	ПS	CIE	
	7	1	
	국	내	
특허출원	국	외	
	7	1	
	국	내	
특허등록	국	외	
	계		
	학사		
인력양성	석사		
1900	박사		
	계		
	상품출시		
사업화	기술	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험제품개발		
비임성	상시험 실시		
		1상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2상	
(IND 승인)		3상	
	의료	기기	
 진료	지침개발		
신의되	료기술개발		
 성	과홍보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	성과 주요 내용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중요 연구변경 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구분 ¹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	변경근거 ^{2」}

^{* 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문서번호 또는 승인일자 중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9.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a) 그네이 괴러 버스(화커버뤼/웨트(시 자셔츠()트()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2	1)
2.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단계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 대비 해당 단계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단게에서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 1.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 진도 상 미흡한 부분 등 문제의 원인과 자체 보완활동 및 대책에 대한 내용과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단계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시스템 상 제출합니다.
- 5. 중요 연구변경 사항: 해당 시 당초 계획(연구개발계획서 기준) 대비 중요 변경사항(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 6.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 다음 단계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으로 작성하고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이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기술·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경쟁기술·지재권 •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뒷면지]

주 의

-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이다.
-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치조미	보고사	4						보안등		
	-10-		'I			.1.0	N 11-1	일반	·[], <u> </u>	큰안 [
중앙행정기관명				410-			설명 Idan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 사업	병		나업명				
				초괴		<u>(애당 /</u> 나개발 스	시 작성) [변변호				
공고번호					-	기 글 스 당 시 작	- —				
0 포턴호						3 시 역 개발과제					
기 국가과학기술					-						
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	순위 소년	부류.	코드명	% 3	순위 소	분류 코.	드명	%
분 부처기술분류											
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	순위 소분	부류 .	코드명	% 3 1	순위 소	분류 코	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국문										
(해당 시 작성)	영문										
	국문										
연구개발과제명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자등록번				
T ひひ / 川 担 / 1 ひ		(우)				법인	[등록번]	호			
. —	성명						직위				
연구책임자		전화			_		대전화	_			
	<u> </u>	우편	\ \ \ \ \ \ \ \ \ \ \ \ \ \ \ \ \ \ \	1414 5			연구자번		اه الح	\	
	전체 1 1 1 1 1 1		<u>YYYY.</u> YYYY.				MM. D				
연구개발기간 단계 (해당 시						YYYY.	MM. D	D(E		-	
		부담		기관 -			IVIIVI. L	יט(צ	그 개월	<i>)</i> 연구	ШHI
$OI \rightarrow II \cup III$		-		·치단체		<u> </u>		합계		212	
[FS] A S]	금 현금	현물	<u>현금</u>	현물	<u>현</u>		는 현금	현물	합계	시	
총계	н сн					-			H · II	16	
1년 차											
1단계 기단계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기관명	책임기	χL	직위		휴대전화	전자-	우펴 .		고	
(해당 시 작성)	기단 6	70/	^\	771		T네근되		1 4	역할	기관-	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3321 12 12											
위탁연구개발기관					\perp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성명				\dashv		직위				
연구개발담당자	지지	·전화			\dashv	- P	대전화				
실무담당자		우편			\exists		연구자번	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8.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	괄연구개 (해당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빌						
기 술	국가과학: 표준분-	기술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의	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 소분류	코드	명	%
분 류	부처기술· (해당 시 ⁻		1순위 :	소분류	코드명	%	2순의	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 소분류	코드	명	%
	통괄연구개빌 해당 시 작성														
9	연구개발과저	명													
전체	체 연구개발	기간													
÷	총 연구개발	:н		천원 디원연 - 	구개발 베: 천			기관부 지원금:			: 천	원,			
	연구개발단	계			응용[베 해당되지				기술· (해당 ·			착수시 종료시)
	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														
	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														
		2	최종 목표	赶											
		7	던체 내용	용											
o	년구개발 -	15	 · ·	목표											
	표 및 내용		 시 작성)	내용											
		n E	 <u>-</u>]	목표											
			-/" 시 작성)	내용											
		(-1 0	1 107	710											
연-	 구개발성과														
활 2 연구	구개발성과 용계획 및 기대 효과 '개발성과의 개여부 및 시 유														
					o4-	,	71 0			생	명자원	_		신골	등종
	'개발성과의 륷·기탁 건수		특허	보고서 원문	· \/\^-	<u> </u>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 정보	생물 자원	화합물	. 정	보	실물
		구입	연구/	. —	규격	. 4		구입	구입가		구입처	비그			EUS
종합	구시설·장비 남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기관	장비	19	(모델명)) '		연월일	(천원)	(전화)	(설치장	당소)	ЩO	록번호
(5	문핵심어					'			•						
	문핵심어 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한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18.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해당 시 작성) : 영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비공개'로 기 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 19.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및 기탁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 20.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현황 :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현황을 기재합니다.

〈 목 차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별첨자료 (참고 문헌 등)

-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연구수행 결과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성과지표명	Ç	연도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목표(단계	별)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¹	실적(누격				
근급기근 ㅇㄱ기ㅋ 시표	목표(단계	별)			
	실적(누격	덕)			
	목표(단계	별)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2」}	실적(누격	덕)			
선무개발되자 측정 현장 자료 5	목표(단계	별)			
	실적(누격	덕)			

- * 1」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단위	전체 항목에서	세계 최그	2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빌	: 목표치	목표설정	
(주요	(주요성능 ^{1」})		차지하는 비중 ^{2」} (%)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근거	
1										
2										

-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	원			등록			하요
번호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기여율	활용 여부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오	한국 문학	현등 기원	인증명 인증 번호		한 취득된	4/18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 ¹	인증여부 ^{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 ³	제안/인증일자

-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 ^{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 ^{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번호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사업화						매결	출액	매출	기술
번호	번호 방식1	사업화 형태 ^{2」}	지역 ^{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발생 연도	기울 수명
							(22)	(= :)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시법된이	50 UI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23 3 <u>8</u>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소	요기간(년)			
	소요예	산(천원)			
	에사 메츠	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게 3 레 =	네그(현건)			
사업화 계획	시장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티되 계탁	점유율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ا ماداا	레(대)	현재	3년 후	5년 후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구입내	체(내수)			
	ŕ	-출			

□ 고용 창출

스버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시티되어	시합되 답세	yyyy년	yyyy년	다기
	=1-4				
	합계				

□ 고용 효과

	구	분	고용 효과(명)
	개발 전	연구인력	
고용 효과	개월 선	생산인력	
고은 표된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 : = = /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u>현</u> 황										
건오	正开	기준 신포	학위별		성	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험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험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와진 세품자인, 메출픽 증정시ㅠ(세급계인시, 답품계극시 중 매출 확인기증 네구 되게사료) 중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논문	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등록	연구시설 · 장비	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5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 사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 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 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1 1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0	0	0
0	0	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니	пσ
------------------------	----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일정파 활용계획표(이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CIE	매년 목표치
국외논문	비당	CIE	
	7	계	
	SC	CIE	
국내논문	H 2	CIE	
	7	계	
	국	-내	
특허출원		외	
		계	
	국	내	
특허등록		외	
	7	계	
	흐	사	
이러아서	석	사	
인력양성	빈	사	
	7	계	
	상품	출시	
사업화	기술	·이전	
	공정	개발	
제품개발	시험제	품개 발	
비임성	· 상시험 실시		
		1상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2상	
(IND 승인)		3상	
	의료	기기	
진료	지침개발		
신의회	료기술개발		
 성	과홍보		
포상 달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	성과 주요 내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2	1)
2.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최종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최종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최종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과 자체 보완활동의 내용 및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뒷면지]

주 의

-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성과활	용보:	고서					일반	보안등 바[], <u>t</u>	·급 보안[1
중앙행정기관명						사	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사업명		사업명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구개발 4 당 시 조	식별번호 작성)				
기 국가과학기술 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시 소분류	코드명	% 35	순위 소	C분류 코.	드명	%
분 부처기술분류 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시 소분류	코드명	% 3	순위 소	L분류 코.	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주소	(우)					자등록번				
연구책임자		당전화 나우편					직위 후대전화 연구자번	lō			
연구개발기간 단계	전체 1 단계		YYY	/. M	M. DD	YYYYYYYY	. MM. C)D(년 년 개월 년 개월)	
(해당 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7 현	지원 기관 배발비 연구2	-	YYY\ 그 오 지방지 현금	. 기	관 등의 체 기	타()		D(니 합계 현물		연구	'⊯비 리 원금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20 20	20	22	2 27	1 22	20	20 2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	임자		직위	휴대전호	사 전자 ·	우편	역할	고 기관·	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7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사업화 - 진 중	후속E 연구 <i>=</i>		기술지 활용		. .	Ē	그 밖의 목적 활		발용 당단
	그 밖의 목적 활용 중단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당전화 나우편					직위 후대전화 연구자번	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9.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시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 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건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9.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 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 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1」}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활용방식 ¹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등 명칭		출원			등록				활용	
번호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기여율	월 등 여부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민오	인증 문야	신당 기원	인증명	인증 번호	건당 획득결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 ¹	인증여부 ^{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 ^{3」}	제안/인증일자

-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 ¹	표준명	표준기구명 ²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 ^{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번호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단위: 천원)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단위: 천원)

					(0.11.00)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사업화						매결	출액	매출	기술
번호	사립되 방식 ¹	사업화 형태 ^{2」}	지역 ^{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국내	국외	배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07						(천원)	(달러)	50 57	1 0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 3 |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HFVII 어드	매결	돌 액	승니	산정 방법	
사립작성	발생 연도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건경 3월	
합계						
					<u> </u>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소	:요기간(년)			
	소요예	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사업화 계획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٨٥١٢١١	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구입대	시(네구)			
개인 효과(신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합계		
- 논인	사타자의	사람자 답제	0000년	0000년	합계	
	합계					

□ 고용 효과

	구	분	고용 효과(명)
	개발 전	연구인력	
고용 효과		생산인력	
자유 표보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u></u> 현황									
인오	正开	기군 한도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 • 장비

구축기 관	연구시설/ 연구장비 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 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	활용상태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과학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등 구체적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 2. 기술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등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 3. 경제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시험제품 제작, 기술 실시,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 4. 사회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홍보, 포상 및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 5. 인프라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기재합니다.
- 6. 그 밖의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1)
2.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총		발 식별변 나 작성)	보호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과제번호	5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기관	·명					기관	유형				
연구책임자/책임지	ŀ	성당	병이		직위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I					D(년 기	월)
현기계술기선		해당 단	계(해당	시 작성)	YYYY. MM. DD - YYYY. MM.					Л. D	D(년 기	월)
연구개발기관의	정-	부지원 기관부담			ユ -	외 기	관 :	등의 지원	원금			중단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연구기	연구개발비		치단	체	기타	()			합계	
(단위: 천원)	1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	물	현금	현물	현i	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연구개발과제의	정.	부지원	기관	·부담	ユュ	의 기	관 :	등의 지원	원금			-1-1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	개발비	지방자	치단	체	기타	()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	현금	!금 현금 현물			현	물	현금	현물	현급	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기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주관"으로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7. 연구책임자/책임자
 -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 내용을 촉괄하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4 7 711 H Lu 1 =	:J & L				_ '	1 · 전, /0/
			۲	연구개발비 현						10-1-1
항목	구분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全계⑤(①+②+③+④)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5-6)	사용률 (⑥/⑤ ×100)	다음단계 이월액 (해당 시)
	현금									
가. 직접비	현물									
	소계									
1) 017141	현금									
1) 인건비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2) 여기시성 . 자비비	현금									
3) 연구시설 • 장비비	현물									
4) 연구재료비	현금									
4/ 신 세포미	현물									
5) 위탁연구개발비1기	현금									
6)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7)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8) 연구활동비	현금									
O) C 20-	현물									
9)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현금									
합계	현물									
	합계									

^{* 1」} 위탁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변	반납액	발생이자 빈	총 반납액		
구분	현금	현물	소계	글러시 :	(C+E)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합니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ć	년구개발비 현				1 . 2, 707			
항목	구분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5 (1)+2 +3+4)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 ×100)	다음단계 이월액 (해당 시)
	현금									
가. 직접비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 • 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5)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6)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7)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8)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의. 신립의	소계									
	현금									
합계	현물									
	합계									

[※]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총 반납액		
구분	현금	현물	소계	글정에서 인	! 🖽 📆	(C+E)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1.	2)
	1)
2.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주관연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1) 전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 당초 연구개발비: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3) 변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4)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5)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사용금액: 연구개발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7)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 8)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 9) 다음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 1)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 3)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 (1) 제2호라목에 따른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제산입
 -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외 다른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 (5) 국고에 반납한 경우: 국고반납

3. 반납액 명세서

- 1) 연구개발비 반납액
 - (1) 사용잔액: 연구개발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2)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또는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3호다목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3) 정부지분율
 - (1)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합니다(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이의신청서

구분		[] 선정평가	[] 특별평가				
		[] 단계평가	[] 최종평가				
	사업명						
	역사업명 당 시 작성)						
연구	개발과제명		년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	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	전체						
개발 기간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평가결과 통지일				
	성명 또는		전화번호				
신청인	연구개발기관명		전자우편				
	소속 (해당 시 작성)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u></u>	요지 및 이유						
OI 01 7	tol 평기경기에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I	요에 대된어 거드된어 조	시기 비라니다			
별첨:	I. 통지된 평가 2. 이의신청 공	·결과서 1부.	중에 네야어 검노야어 구	시기 미립되다.			
			년 신 청 인 :	월 일 (인)			
중잉	항정기관의	시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구분: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 2.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6.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7. 평가결과 통지일: 평가결과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날을 기재합니다.
- 8. 신청인: 이의신청 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9. 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10. 신청 요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사업명											
내역시	업명(해당 시	작성)										
연	구개발과제	명				연	[구개빌	라제번호				
주관	연구개발기	관명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개발기	관명										
연-	구개발기관 기관명	외										
연구	전체											
개발 기간	해당 C (해당 시											
신청인				소속 (해당 시 작성)	I			전자	우편			
				전화번호	5			우편· (직장 또·				
0 = 1	구분		[] 연구개발 [] 연구개발				·라제의	목표 조기	달성으로	계속수	행 불	필요
요청 사유	주요내	용										
	요청 사항		연구개	발과제 중단	<u> </u>]	/	연구개빌	과제 변	 경 []	
		구분	[]연구개발 등	목표 변경	[]	연구개빝	날기관 '	변경 [] 연구착	임자	변경	
	개발과제	丁正	[] 연구개발비	변경	[]	연구개빝	날기간 '	변경				
	변경 난 요청의			변경 전					변경 후			
경우 작성하지 주요		주요 내용										
							•					
위와	같이 연구	'개 발고	나 제 변경 또는 중	중단을 요청	하니	검토하	여 주시	기 바랍니	니다.			
							신	청 인 :	년	월		일 인)
	중앙행정	기괴	'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9.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 사유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 10.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 11.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	L 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제출인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I 드 크 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 휴대전화 / 직장전화	!궁측면오						
	전자우편							
[] [U = T]	성명							
[] 대표자 [] 관리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선정대표자	소속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휴대전화 / 직장전화							
(예당 시 극장)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	보호위원	회 🗆 소	관 중앙형	행정기	관		
	혁신법」 제33조제3항에 I 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분 및 환수	- 사진	전통지 나	내용의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	 관의 장 귀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 관리?	 인, 선정대	표자 또	
첨부서류	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	그 밖에 주장을 뒷	받침하는 증	거서류니	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	의견검토	→	처분 및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소	 관 중잉	항정기관	<u></u>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당 연	구개	발과	제	정보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1. 해당 연구	'개발과	제 정보									
사업	d명										
연구개빌	<u></u> 라제명										
연구개발:	과제번호	5									
연구개빝	날기관명										
어그게바다그기	전처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	ᆁ									
		정부지원		부담		기관				합계	
	전체	연구개발비	연구7 현금	개발비 현물	지방자 현금	치단체 현물	기 현금	타 현물	현금	· · · · · · · · · · · · · · · · · · ·	합계
		현금	연급	연결	연급	연골	연급	연결	연금	연골	업계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기관	부담		의 기관	등의 지	원금		합계	
	해당	연구개발비		내발비	지방자	1	•	타			=1 =11
	단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ᇪᅜᄛ	ᆔ요									
		· · · · ·	·여제하	(기간	: 년	개월)	제2	대부가금] (운	1)
제재처분 및	환수 -	ᄼᅷᆛ	·수금	(· _ 원		_ "	" * 1	4 (_	- /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	2청 의견	¹ 제출사유									
			재경	검토 요	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	 0 IT					
						••					
		분 및 환수				검토를	요청하	·는 의견	변을 제품	출하오니	기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	여 재검토하	여 주시	기 바育	랔니다.						
										21	61
								년	i	월	일
						i I	ᅯ 이				(01)
						신	청 인	•			(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